

「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 영 일

나. 제안이유

- 물가 상승률 반영을 통한 사용 요금의 현실화 및 징수 대상
종목 추가 등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에
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·공공성을
확보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정비(안 별표 1)
- 구미시 거주자 사용료 감면율 변경(안 제11조제1항제3호)
-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~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: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시설 개선에 따른 이용 종목을 확대하고 구미시 거주자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%에서 30%로 조정하는 등 사용료를 정비하고, 용어 및 조문 표현을 수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타 시군 수상레포츠 시설 요금 대비 현실적인 사용료의 책정과 구미시민 이용료 감면율의 조정으로 운영의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시민 이용료 감면을 축소로 이용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, 체험 센터의 진입로 개선과 안내 표지판 설치, 간식·음료가 구매 가능한 편의시설 확충 등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운영방식을 ‘사무형 위탁에서 수익창출형 위탁’으로 전환하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과 함께 마케팅·상품개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